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2032

2020년 12월 16일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0. 10. 16.

2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3. 회부일자 : 2020. 10. 26.

4. 상정일자 :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(2020. 12. 7.)

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원안가결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평생교육진로국장 백정흠)

1. 제안이유

○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, 남북관계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실행이 어려워 전액 예치금으로 조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지출계획에서 고유의 정책사업 「교수-학습활동지원」이외에 「예비비 및 기타(예치금)」를 별도로 신설함

○ 남북관계,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으로 계획된 북한체험학습(1억원), 학술·문화·스포츠 등 남북교육교류(2억원) 등의 3억 5,360만원의 지출이 어려움

○ 이에 고유의 정책사업 「교수-학습활동지원」예산을 감액하고 전액 「예비비 및 기타(예치금)」로 조성함

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제2032호, **「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」**은 '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⑴ 제안이유

○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소관 기금 운용계획중 **「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」**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⑵ 주요내용

○ 당초 기금지출계획상 고유사업과 재무활동을 1개의 정책사업(교수-학습활동지원)에 편성하였으나, 이를 별도 정책사업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재무활동(예비비 및 기타)을 신설함

○ 정책사업「교수-학습활동지원」에 당초 편성되었던 예치금 △6억 4,600만원을 감액하여 신설된 정책사업「예비비 및 기타」의 예치금 6억 4,600만원을 증액함

○ 코로나19와 남북관계 등의 상황변경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고유사업인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비 △3억 5,400만원을 감액하고 신설된 정책사업「예비비 및 기타」의 예치금 3억 5,400만원을 증액함

〈표 3-1〉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수입				지출			
구 분	당 초	변 경	증 감	구 분	당 초	변 경	증 감
계	1,000	1,000	–	계	1,000	1,000	–
교특회계 전입금	1,000	1,000	–	비융자성 사업비	1,000	–	△1,000
이자수입	–	–	–				
예치금 회수	–	–	–	예치금	–	1,000	1,000

■ 수입계획 변경 : 해당없음

■ 지출계획 변경 : 사업내역별 증감
- 비융자성 사업비 10억원 감액 : (당초) 10억원→(변경) 0원
- 예치금 10억원 증액 : (당초) 0원→(변경) 10억원

※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감액 후 예치금 증액

3. 검토내용

○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'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(10억원)과 운용규모는 동일하나,

○ 관련 법률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
- 지출계획중 ① 정책사업인 **교수-학습활동지원**의 지출액을 당초 계획(10억원)보다 △100.0%, △10억원 감액하고, ② 정책사업인 **예비비 및 기**

타의 지출계획을 10억원 순증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임

○ 기금 운용계획의 지출계획 세부 변경 내역을 검토하면,

-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, 동 기금운용계획 심사시 예치금까지 고유사업에 포함시켜 단 1개의 정책사업으로 지출계획을 편성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어,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당초 **교수-학습활동지원**에 고유사업으로 편성된 예치금 △6억 4,600만원을 감액하고

- ② 코로나19 확산과 남북관계 등 사정변경에 따라 추진하지 못한 **교수-학습활동지원**(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) △3억 5,400만원을 감액하여

- ③ 정책사업인 **예비비 및 기타**를 신설하고 감액된 **교수-학습활동지원** 사업비 전액(△10억원)을 예치금 항목으로 10억원 증액하려는 것임

〈표 3-2〉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 변경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정책/단위/세부/사업내역	변경(A)	당초(B)	증감(A-B)	증감사유
합계	**1,000**	**1,000**	**-**	
교수-학습활동지원	-	1,000	△1,000	
학생생활지도	-	1,000	△1,000	
학생생활지도지원	-	1,000	△1,000	
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	-	354	△354	사업추진 어려움에 따른 감액
예치금	-	646	△646	정책사업 정정을 위한 감액
예비비 및 기타	1,000	-	1,000	
예비비 및 기타	1,000	-	1,000	
예치금	1,000	-	1,000	
예치금	1,000	-	1,000	감액분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

○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0년도에 10억원을 조성하여 집행계획 없이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려는 것으로 '20년도말 조성액은 10억원으로 계획됨

- 예치금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수입 증대 등의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한시적으로 보관하는 지출항목인 바,

- 남북관계 및 국제 정세 등의 영향을 받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특성 상 지출계획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〈표 3-3〉 2020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백만원, %)

기 금 명	2019년도말 조성액 (A)	2020년도기금운용계획		2020년도말 조성액 (B=A+㉠-㉡)	증 감 (C=B-A)	증감률 (C/A)
		수 입 ㉠	지 출 ㉡			
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	-	1,000	-	1,000	1,000	순증

Ⅳ. 심사결과

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2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2020. 12. 16.)

3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 안 번 호	2032

제출연월일 : 2020년 10월 16일
제 출 자 : 서 울 시 교 육 감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출계획에서 고유의 정책사업 「교수-학습활동지원」 이외에 「예비비 및 기타(예치금)」를 별도로 신설함

○ (정책사업 추가) '교수-학습활동지원' → '교수-학습활동지원'과 '예비비 및 기타(예치금)'로 구분

지출계획				
부문	정책	단위	세부	사업내역
유아 및 초중등교육				
	교수-학습활동지원			
		학생생활지도		
			학생생활지도지원	
				1.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
				○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
				○예치금

⇨

지출계획				
부문	정책	단위	세부	사업내역
유아 및 초중등교육				
	교수-학습활동지원			
		학생생활지도		
			학생생활지도지원	
				1.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
				○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
예비비				
	예비비 및 기타			
		예비비 및 기타		
			예치금	
				예치금

나. 남북관계,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으로 계획된 북한체험학습(1억원), 학술·문화·스포츠 등 남북교육교류(2억원) 등의 3억 5,360만원의 지출이 어려움

다. 이에 고유의 정책사업 「교수-학습활동지원」 예산을 감액하고 전액 「예비비 및 기타(예치금)」로 조성

라. 수입· 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천원)

수 입 계 획			
구분	당초계획 (A)	변경 (B)	증감 (B-A)
계	1,000,000	1,000,000	-
교특회계 전입금	1,000,000	1,000,000	-
이자수입	-	-	-
예치금 회수	-	-	-

지 출 계 획			
구분	당초계획 (A)	변경 (B)	증감 (B-A)
계	1,000,000	1,000,000	-
교수-학습활동지원	1,000,000	-	△1,000,000
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	353,600	-	△353,600
예치금	646,400	-	△646,400
예비비 및 기타(예치금)	-	1,000,000	1,000,000

- 정책사업「교수-학습활동지원」 10억원 감소

►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3억 5,360만원 감소: (당초) 3억 5,360만원 → (변경) 0원

► 예치금 6억 4,640만원 감소: (당초) 6억 4,640만원 → (변경) 0원

- 정책사업「예비비 및 기타(예치금)」 10억원 증가

► 예비비 및 기타(예치금)를 별도 정책사업으로 분리 편성: (당초) 0원 → (변경) 10억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>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민주시민교육기획·운영팀 이희숙(☎ 6973-9832)